

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. 5. 21 선고 2019가단500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]

전 문

원고A단체

피고B

변론 종결2019. 5. 14.

판결 선고2019. 5. 21.

주 문

1. 피고는 C에게 충남 홍성군 D 전 271m² 및 E 전 241m²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등기계 2003. 8. 4. 접수 제13979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, 제1항)

판사권보원

별지